

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 
도시·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  
【2021. 3. 4.(목) 10:00】

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·교통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1년 3월 4일  
전문위원 배 금 택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1 - 14
- 나. 발 의 자: 황동현 의원 외 9명
- 다. 발의일자: 2021년 2월 17일
- 라. 회부일자: 2021년 2월 25일

## 2. 제안이유

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과 안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“개인형 이동장치”에 대해 규정함(안 제2조)
- 다. 구청장,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라.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(안 제4조)
- 마.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- 바. 교육 및 행사의 시행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- 사.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- 아.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(안 제8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9호의2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조부서: 교통행정과

라. 입법예고(2021. 2.19. ~ 2.24.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가. 제정취지

-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

나. 주요 제정내용

○ 목적(안 제1조)

-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목적으로 규정함

○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- 개인형 이동장치<sup>1)</sup>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

---

1) 개인형 이동장치 :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9호의2에서 정하고 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

(1.전동킥보드, 2.전동이륜평행차, 3.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)

○ 책무(안 제3조)

-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
-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함

○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
-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함

○ 실태조사 등(안 제5조)

-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함
-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구민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

○ 안전문화 조성 등(안 제6조)

-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할 있음을 규정함

○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
-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규정함

## 다. 종합의견

- 최근 전동킥보드,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(PM, Personal Mobility)은 친환경성, 경제성, 휴대성 등의 이유로 교통수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
-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가까운 거리는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보다는 일종의 언택트 교통수단인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시장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<sup>2)</sup>하고 있는 반면,
- 개인형 이동장치의 높은 사고 위험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<sup>3)</sup>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
-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(2020. 12.10.)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과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
-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도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

---

2)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규모(판매량) : 2017년 9만7,500대, 2018년 16만6,500대  
2019년 19만6,200대 (출처: 한국교통연구원)

3)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건수 : 2017년 11건, 2018년 225건, 2019년 447건  
(출처: 도로교통공단)

**참고1****관련 자료** **강서구 전동킥보드 업체 현황(2021.2월)**

연번	업체명	운영대수	비고
1	(주)라임코리아	600대	서울시 협약
2	(주)지바이크	200대	서울시 협약
3	(주)대시 컴퍼니	보관대-50대 킥보드-60대	서울주택도시 공사 협약
4	(주)피유애플	7대	양천구 주요 활동권역

**□ 도로교통법**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9. “원동기장치자전거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.

가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(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)의 이륜자동차

나.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(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)의 원동기를 단 차(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)

19의2. “개인형 이동장치”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**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(행정안전부령)**

제2조의2(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)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.

1. 전동킥보드
2. 전동이륜평행차
3.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

(본조신설 2020. 12. 10.)